

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성신교정 일반대학원 학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시행과 대학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선수과목 및 학점인정

제2조(선수과목)

- ① 시행세칙 제3조제2항의 학사학위과정 신학비전공자가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입학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본교 청강 혹은 국·내외 학위수여기관에서 수강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소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시험을 통해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 인식론, 형이상학I·II, 공관복음I·II, 모세오경, 그리스도론, 교회론, 교부학 I·II. (이상 10과목).
- ② 학사학위과정 신학비전공자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다음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희랍어초급(모든 전공 공통), 히브리어초급(성서신학 전공에 한함).
-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36학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석사과정 포함 60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하상장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적 산출 시에는 당해 학기에 이수한 선수과목 성적을 포함한다.

제2절 편입학

제3조(학점인정)

- ① 시행세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가 학점인정 신청을 한 경우 대학원교학 부장은 신청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과목, 석사과정 커리큘럼, 학사과정 전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6학점까지 학점인정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편입생의 전적 대학원 학점인정 기준은 제8조와 같다.

제4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후 잔여 여석이 있거나 잔여 여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면접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

- ① 각 학위 과정별 편입 학기 및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석사과정	2차 학기	신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과정을 1차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	2차 학기	신학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원)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1차 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과정 포함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차 학기	신학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원)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2차 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과정 포함 44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전항의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원)이란 가톨릭 사제를 양성하는 대학(원) 및 교회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제7조(제출서류) 편입학 지원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또는 사본)과 함께 한글 번역문(공증 불필요)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어로 된 증명서는 제외)

1. 석사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다. 대학 졸업증명서(신학전공)
- 라. 석사과정 수료증명서
- 마.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바. 기타 학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2. 박사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다. 신학석사 학위증명서
- 라.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마.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 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사. 기타 학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8조(편입 학점인정) 편입 학기에 따른 학점인정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2차 학기 : 9학점 이내
- 2. 박사과정 2차 학기 : 석사과정 포함 40학점 이내
- 3. 박사과정 3차 학기 : 석사과정 포함 44학점 이내

제3절 선택과목 및 세미나

제9조(수강인원)

- ① 대학원 선택과목 및 세미나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은 4명 이상(단, 논문지도세미나는 제외)으로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다.
- ② 수강인원 산정에 청강생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4절 논문유사도검사

제10조(검사 주체)

- ① 논문유사도검사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생 본인이 수행한다.
- ② 논문지도 교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방법) 학위청구자는 다음의 검사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시스템	검색대상	이용대상	이용확인서 제출양식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국내 학술지 (2004년 이후발간자료)	한국어 논문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표지(1장)
턴잇인(Turnitin)	전세계 학술, 웹자료	영어 논문	디지털수령증 (1장)
COPY KILLER	SCI급 논문, 웹자료	한국어및영어논문	검사결과확인서 (1장)

제12조(이용확인서 제출) 학위청구자는 논문유사도검사 후 이용확인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위청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2조)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9조, 제11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